2024
Mar_2nd
459호
JOYANG
CUSTOMS
SERVICE CORP.
Customs
FOCUS
관세법인 조양
JOYANG CUSTOMS SERVICE CORP.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CONTENTS

01
관세사 칼럼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2/2)

02
이주의 초점

분할증명서 자동발급 등 AEO공인 신규혜택 추가

03
판례연구

구매수수료 및 가산세에 관한 판례연구

04
개정법령

최근 개정 법령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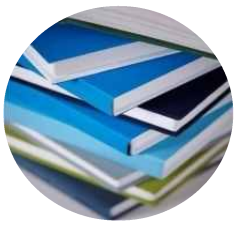

05
질의응답

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

06
기타 무역소식

관세청 공지 ·무역 뉴스 등 기타 무역소식

관세사 칼럼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2/2)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과정(2/2) >

제4장 원산지 증명서의 재발급, 변경 및 재발급

제17조 [증명서 재발급]

신청인은 물품이 선적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출 물품의 운송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심사를 거쳐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하고 재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재발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제18조 [증명서 재발급]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신청인은 원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원본증명서의 인증된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관은 검토 후 발급하고 '재발급'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원본 인증서를 폐기조치 합니다.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제19조 [증명서 변경]

신청인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원본 증명서의 유효 기간 내에 원본 발급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자는 폐기된 원본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재심사해야 합니다. 원본 증명서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은 새 증명서에 원본 증명서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2) 원본 증명서의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기관은 검토 후 원본 증명서를 수정하고 변경 내용에 서명하고 원본 발급 기관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신청자에게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발급, 갱신발급, 변경 발급 등 증서 발급기한]

원산지 증명서 재발급, 갱신발급 또는 변경발급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변경된 인증서와 인증된 실제 사본은 원본 인증서와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22조 [수입자의 검증 및 처리]

물품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주관 기관의 검증 요청에 따라 발급 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검증 결과를 해관총서의 대외

등록 연락처(对外备案的联络点)에 피드백 합니다. 해관총서 대외등록연락처는 검증 결과를 확인한 후 해외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제23조 [원산지 표시 관리]

수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원산지 표시에 표시된 원산지가 신청서 원산지 증명서의 해당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4조 [감독검사]

해관총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감독, 검사해야 합니다.

제25조 [대외정보교환]

해관총서는 발급기관, 인감, 발급인원 등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원산지 전자정보의 대외교환을 담당합니다.

제26조 [백지 증명서 및 인감 관리]

발급기관은 해당 기관의 백지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인장 관리를 책임집니다.

제27조 [발급 데이터 통계]

해관총서는 전국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통계를 담당합니다. 발급기관은 해당 기관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발급통계를 담당합니다.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는 무역 촉진 시스템의 원산지 증명서 및 인증에 대한 통계를 요약하고 매월 해관총서에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무역 촉진 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매월 현지 세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28조 [법적 책임]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훔친 경우 세관은 5,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사취, 위조, 변조, 매매 또는 도난한 경우 물품 가치가 동일하지만 물품 가치가 5,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세관은 불법 소득을 몰수합니다.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취득한 원산지 증명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제29조 [법적 책임]

신청인이 원산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대리인의 법적 책임]

대리인이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원산지 증명서를 사취, 위조, 변조, 매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세관은 대리인에게 3,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31조 [위법 단서 전달]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와 지역별 무역 촉진 기관은 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세관에 불법 단서를 전달하고 사례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7장 부칙

제32조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최혜국 대우, 반덤핑 및 상계, 보호 조치, 원산지 표시 관리, 국가 수량 제한, 관세 할당량 및 기타 비특혜 무역 조치 및 정부 조달, 무역 통계 및 기타 활동에서 수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 증명 문서를 말합니다.

제33조 [보편적 원산지 증명서]

보편적 원산지 증명서란 중국 수출 물품이 특혜국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발급된 물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관내에서 원산지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제34조 [지역성 특혜원산지증명서]

지역성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무역약정에 따라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관세양허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된 상품의 원산지 또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제35조 [기타 증명서]

특정 산업 및 특정 제품에 대해 발급된 재수출 증명서, 가공 및 조립 증명서, 백 투 백 원산지 증명서, 이동 증명서 및 담배 진정성 증명서, EU로 수출되는 비특혜 수입 특별 약정에 따른 제품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특별 증명서는 이 조치를 참조하여 발급됩니다.

제36조 [특별규정]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신청 및 재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신청자료의 보관 기한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협정 및 우대 무역 약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37조 [해석권]

해관총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38조 [시행일]

이 조치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중화인민공화국 보편적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행정조치'(국검무[1989]443호), '중화인민공화국 보편적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행정조치 시행세칙'(국검무[1990]317호), 해관총서가 2018년 5월 29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비우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행정조치'(국가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령 제114호, 국가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령 제184호 및 해관총국령 제238호, 제240호 개정)에 따라 동시에 폐지됩니다.이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해관총서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제정한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이 이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조치가 우선합니다.

출처-중국해관총서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이주의 초점

국내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2024.02.29 세원심사과)

1. 배경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대상 원재료범위*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관련근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항 1호의 다목**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국내 생산 수출물품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지 않고 수출기업 등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사용된 포장용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채택('24.1.26.)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2)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는 '환급대상 포장용품'으로 회신('24.2.23.)

<환급대상 원재료로서 포장용품>

구분	생산 및 포장 형태		환급대상 원재료		
기존	(생산자) 제조·가공·**포장**	(수출자) 수출	(생산자) 결합·소모물품·**포장용품**		
확대	(생산자) 제조·가공	**(수출자등)** **포장**+수출	(생산자) 결합·소모물품	+	**(수출자등)** **포장용품**

2. 인정기준

(1) 적용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환급대상 포장용품에 해당

① 포장유형: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제3자가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② 포장용품: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며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 것

③ 국내거래증명 등: 포장용품의 국내거래 시 제증명 및 수출이행기간 등 기타 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적용시기

2024. 2. 23. 이후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물품)의 환급 등* 신청부터 적용 * (관련규정)「수출용 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2조(정의) 제5호

3. 환급 등 신청방법

환급 등 신청인은 환급 등 신청 전에 포장용품 소요량이 적용된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환급신청서·기납증(수입원재료, 병)에 포장용품의 내역, 사용량 등을 기재하여 환급등을 신청

(1) 포장용품 소요량 계산

수출물품의 포장을 수행한 수출자 또는 제3자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을 산정하고 근거 서류*를 보관하며, 환급신청인이 다른 경우 소요량 근거 서류를 환급신청인에게 제공

*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것임을 증명(소요량계산서, 포장명세서 등)

(2) 소요량산정방법 신고

환급 등의 신청인은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에 따라 환급 등 신청 전에 위 포장용품 소요량 산정을 근거로 수출물품의 소요량산정방법*을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 등 신청 세관장에게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신고

* 수출물품의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자의 제증명(기납증 등)에 반영되므로, 환급등신청인의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 및 신고 추가적으로 필요

**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3) 환급 등 신청

환급 등 신청인은 환급대상 포장용품을 환급신청서·기납증(수입원재료, 병)에 기재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환급 등 신청

4. 시행일

2024. 2. 29.부터 개정 환급고시 시행일까지

본 지침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을 수출기업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항1호의 다목의 환급대상 포장용품로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및 자세한 환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히 관세법인 조양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관세청

판례
연구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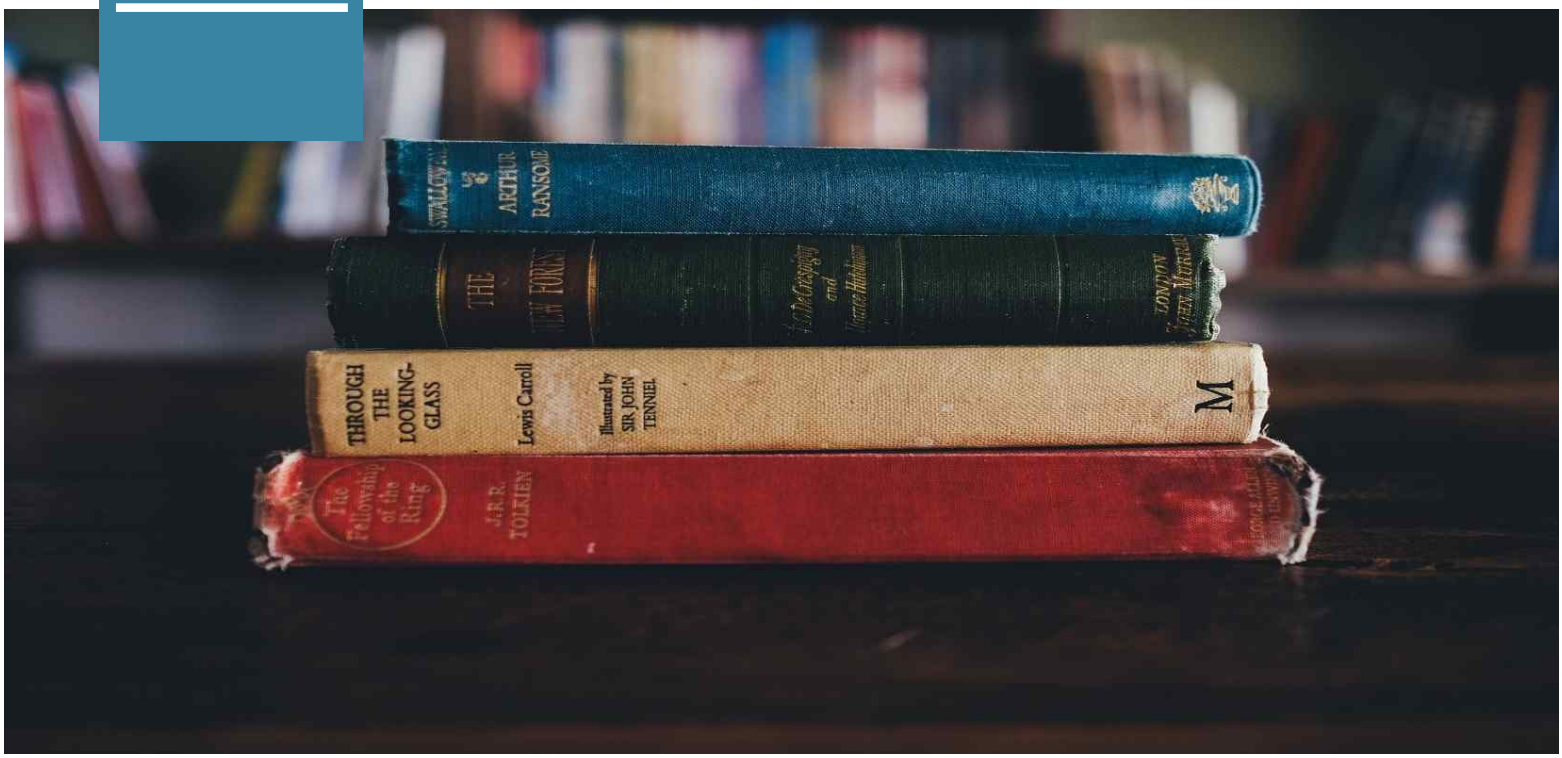

I.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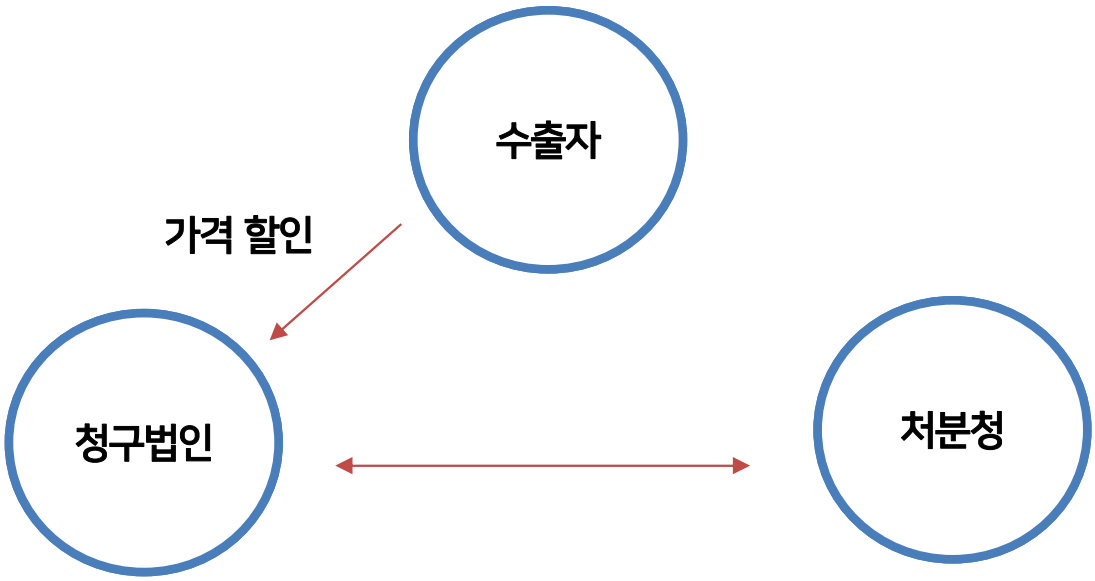

수출자와의 협의에 따라 책정된 금액

∴ 인정되는 할인으로 보아 비과세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할인에 해당

∴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어 간접지금금으로 과세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수출자와 그 관계회사들(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영업손실 등을 사유로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할인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이미 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보수목적으로 수출자와의 협의로 책정된 단가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서의 유. 무상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연도에 수입된 물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유상수입되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정 예해2.1.과 「관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 비추어 '조건 또는 사정'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의무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들 간의 '끼워팔기', '연계거래/일괄거래/구상무역' 및 '제품환매' 등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를 둘러싼 막연한 상황이나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별 가격변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수출자와의 협의에 따라 매년 거래가격이 갱신될 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차등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2. 처분청 주장

1)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2.1에 비추어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직접적인 반대급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거래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내 판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국,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수입할 물품의 가격협상 조정을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현저한 국내가격의 변동이나 제품의 성분 또는 OOO의 상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수입가격은 이에 연동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소폭으로 하락하거나 오히려 올랐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전년도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점을 보았을 때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한 것은 쟁점물품의 거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III. 관련 법률(발췌)

1. 관세법 제 30조 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 제 30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 ·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 22조 2항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4.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

협정의 기본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그들 사이에 직 · 간접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우의 조건 및 고려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V. 쟁점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영업 손실 등의 사유로 수입가격을 할인 받은 것에 대하여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와의 협의에 따라 매년 거래가격이 갱신될 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차등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 않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국내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인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국내영업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내 판매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인하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사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거래가격의 결정절차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시장상황, 제품전략 및 기타 관련된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조건을 검토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연단위 이전가격의 검토와 지역별 제품등록과 경영상황을 근거로 현행 이전가격을 검토하는 지역별 검토 절차를 거쳐 본사와 지역간의 이전가격이 확정되며, 주요하게 고려할 요소의 변화가 없는 한 확정된 이전가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입 가격 및 국내판매가격과 구매과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은 매월 또는 매분기 실제 영업이익률이 OOO일 경우, 손익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수출자와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협상하고, 수출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족분을 사후조정과정을 통하여 세전영업이익율로 보전 받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수익조정을 하지만, 현저한 국내가격의 변동이나 제품의 성분 등의 상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수입가격은 이에 연동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OOO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의료기기 및 이에 장착되는 부분품 등을 수입하면서 국내시장상황,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수입단가를 비정상적으로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고, 이에 해당 수입단가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무상수입하면서 정상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병원에서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에 비해 낮게 수입신고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인하된 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상가격과의 차액만큼 과세한다'고 통지하였다.

6.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격 결정절차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 인하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가격인하가 청구법인의 국내경쟁력 강화 및 더 나아가 수출자의 수출증대로 이어지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인하가 간접적으로 발생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 시사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은 부인됩니다.

이 때 조건 또는 사정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활동 또는 의무사항을 의미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이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할인금액은 거래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일정 할인을 받았으나 할인 행위의 반대급부가 '조건 또는 사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할인을 인정하였습니다. 할인을 받은 대가가 수출자를 위하여 혹은 수출자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거래상 의무사항에 기반한 할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할인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조심-2014-206

개정
법령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전달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1. 개정사유

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의 징수와 면제에 대한 통일된 집행으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성실한 납세자 권익 보호가 목적임.

2. 주요 개정내용

(1) 적용대상

협정관세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관세법인 조양
JOYANG CUSTOMS SERVICE CORP.

(2)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여부 적용 기준

① 수입자 귀책사유 적용 기준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
-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메일 등) 제시필요 및 수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

- (부과) 세관장은 부적정한 협정관세 적용의 원인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사유가 부과사유(별표 2)에 해당하는경우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부과·징수함
- (원칙적 면제) 세관장은 원칙적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사유(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면제대상으로 심사함.
  - 수입자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관세법」상의 특수관계인 경우
  - 「한-미 FTA」와 같이 협정에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수입자의 의무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면제신청 및 심사

- (면제신청 기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의 면제신청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함. 다만 세관장이 경정통지하는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해야함
- (면제신청 방법)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은 자율점검 안내 또는 경정처분하였거나 경정하고자 하는 원산지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개정 법령

- (면제여부 심사 기준) 수입자는 조건부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심사사항 모두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제한사유와 직접 관련된 의무사항 등은 이행해야하고, 2개 이상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별로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면제여부 심사 절차)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제신청의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출처-관세청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질의 응답

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

1. 계약상이수출 처리 가능 관련

□ (질의)

Q. 특정 부품이 들어간 완제품을 수입했는데, 특정 부품이 고장나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만 재공급(관·부가세 납부 완료)받았고, 고장난 부품은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입신고된 품목과 수출신고된 품목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A. 최초 수입한 물품에 고장 등이 있어 계약 상이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송하기로 한 것이라면, 「관세법」상 환급 중 계약상이수출 환급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초 수입신고 당시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에 부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수출신고의 물품이 동일 물품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아 계약상이수출(거래구분 '93')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질의 응답

또한 '수입물품 대체용'으로 차후에 수입된 물품에 고장 등 이상이 있어서 실제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후에 수입된 특정 부품에 대해 계약상이수출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신고 관련 자료 등의 심사는 관할 세관장이 신고 건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문의사항 등 실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한 통관지 세관 수출부서 또는 이용한 관세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살펴보면, 수입됐던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될 때 납부했던 관·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반송)한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이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해외 판매자와의 메일내역 등의 입증서류와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이수출로 인정받으면 해당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수입신고번호와 환급 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핸디캐리를 통한 수입 절차 관련

□ (질의)

Q. 해외에서 핸드캐리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답변)

A. 판매용 등 상용물품을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객기 내에서 배포하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휴대품 유치서를 교부 받아 INVOICE 또는 구입영수증 등 가격자료 등을 첨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신고서' 양식의 신고대상물품 중에 '상용물품' 란에 체크하시고 휴대품통관 담당자로부터 반입 물품 목록을 확인 받은 후 유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용물품은 유치보관창고에 보관하게 되고,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을 통해 정식수입신고수리를 완료한 후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출처-CUSTRA

기타
무역
소식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된다

<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된다>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 회의 및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기타 무역 소식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종이 원산지증명서(C/O)의 국가 간 이동·제출 절차 >

※ ③~⑤ 단계에서 배송 시간·비용 소요, 도난·분실·훼손 등 위험이 있고, 외국세관의 원본여부 확인 과정에서 통관지체 우려가 있으나,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시 ③~⑤ 단계가 생략됨**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관세청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기타
무역
소식

의료기기 수입신고, 더욱 간편해집니다

< 의료기기 수입허가 13종, 입력 자동화 추진>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목)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란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 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 받아 관세청 통일 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기타
무역
소식

의료기기 수입신고, 더욱 간편해집니다

< 자동입력 허가정보(13종) >

- 수입업 허가정보(2종) : 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
- 품목 허가정보(11종) : 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상호, 제조원·제조의뢰자 주소,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한글명, 제조원·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품목허가(신고)일자

이번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혁신'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식약처와 지속 협력한 결과이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편의 제고와 신속 통관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로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관세청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